

---

# 입 법 정 보

2017-15호

---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  |    |
|--|----|
|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 5  |
| 2.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br>(보건복지부) ..... | 5  |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 5  |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 7  |
|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br>.....       | 7  |
| 6.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 8  |
| 7.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 8  |
|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고용노동부) ...                | 8  |
|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 8  |
| 1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 9  |
| 1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 9  |
|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 10 |
|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 10 |
|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 11 |
| 1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 11 |
| 16.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 11 |
| 17.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 12 |
| 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 12 |
|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 12 |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 13 |
| 2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 13 |
| 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 14 |
|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 14 |
| 2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 15 |

|   |    |
|---|----|
| 26.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 16 |
|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16 |
| 28.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16 |
|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17 |
|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17 |
| 31.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8 |
| 32.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8 |
| 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9 |
| 3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9 |
| 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20 |
| 36.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0 |
| 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20 |
| 3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r>(보건복지부) | 20 |
| 3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21 |
| 4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실)               | 21 |
| 41.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22 |
| 4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2 |
| 4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22 |
| 44.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23 |
| 45.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24 |
| 46.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25 |
| 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25 |
| 4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26 |
| 4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26 |
| 5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26 |

|  |    |
|--|----|
| 5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27 |
| 5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27 |
| 5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r>(보건복지부)                             | 28 |
| 5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28 |
| 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28 |
| 5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29 |
| 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0 |
| 5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0 |
| 5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 31 |
| 60.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 31 |
| 6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32 |
| 6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32 |
| 63.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br>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3 |

##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7. 10.                      • 마감일자 : 2017. 8. 21.
- 수의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인상,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아빠의 달’ 수당 확대(안 제11조의 2)  
‘17.7.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 나.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개선(안 제15조)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다.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별표9)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의료업무수당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 2.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7. 10.                      • 마감일자 : 2017. 8. 21.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1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급차 운행 연한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7. 10.                      • 마감일자 : 2017. 8. 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되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 최소화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안 제13조의2, 별표5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의 하나로 재난 대비 및 대응 등 재난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응급실 출입 제한(안 제18조의3)

응급실 감염예방 및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기준 및 출입자의 명단 기록·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응급실 체류 제한(안 제20조의2)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신속히 입원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유지해야하는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정함

라. 응급구조사 보수 교육 절차 마련(안 제35조)

응급구조사 업무 복귀하는 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대상 및 내용, 방법, 시간 등을 규정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공백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차등화 함

마.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 절차 등(안 제36조의3)

구급차 운행연한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구급차 말소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를 규정함

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및 절차(안 제38조, 별표 15의2 신설)

효율적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을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 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함

사. 응급장비 설치 등 신고 의무화(안 제38의2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변경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 절차를 정비함

아. 출동 및 처치기록 등의 내용 및 방법(안 제40조)

구급차 운용지침을 통해 시행중이던 운행기록대장 작성 법제화하고, 구급차등 운용자의 운행기록 대장 작성 및 3년 보존을 의무화함

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8)

구급차 신고 및 변경신고 위반, 운행연한 초과 운행 위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7. 10.                      • 마감일자 : 2017. 8. 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되어 구급차 말소신고, 응급실 출입명단 기록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신고, 자동차 운행연한 초과 금지등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단일 부과체계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와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7. 10                      • 마감일자 : 2017. 8. 21.
- 비디오물 관련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폐업신고 편의절차 마련(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2)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중 어느 하나에게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함

## 6.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7. 10.                      • 마감일자 : 2017. 8. 21.
- 미래 전장환경에서 정보우위를 달성하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근실 시간 작전부대에 지원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정보사 3여단과 국방지형정보단을 단일 지휘체계로 통합하여 지리공간정보사령부를 창설하고, 암호정책 및 국방기상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등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7.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7. 10.                      • 마감일자 : 2017. 8. 21.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소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폐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행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요건 및 유·무료 직업소개소 신고·등록 관련 신청 서식 중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장애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7. 10.                      • 마감일자 : 2017. 8. 21.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참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 시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7. 10.                      • 마감일자 : 2017. 8. 21.
- 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 참가와 개최, 선수 선발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1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7. 11.                      • 마감일자 : 2017. 8. 21.
-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허가 등을 신청할 때에 외부토석 반입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출하는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7. 11.                      • 마감일자 : 2017. 8. 2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및 규모 이하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카드납부 대행기관 및 수수료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 반입 규모 및 거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체산림조성비 카드납부 대행자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안 제 24조제5항 제6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에 따른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외부토석 반입의 예외적 허용 기준(안 제36조제5항)

토석채취지 복구에 필요한 토석과 산지전용지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토석을 토석채취 사업장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거리를 토석채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6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규모는 허가받은 최초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이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개발 산지에서 채취되는 토석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재수급 안정화에 기여 하고자 함

다. 토석 및 채석 등 사업장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중복 겸임기준 마련(안 제50조의3제4항)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 2개 이상의 채석신고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한 정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1.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조문에 명시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한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시 이관 방안을 신설하고, 기록물 온라인 열람서비스 근거 마련, 비밀기록물 이관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2.
- 수입신고 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내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시험검사 없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통관 억류할 수 있는 무검사 억류제를 신설하고,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 **1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2.
-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686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류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교환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서류를 확대하며, 국제등록명의인이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특허고객번호의 기재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 상징이 새롭게 만들어져 부처별 상징도 정부 상징을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있는 변경되기 전의 정부 상징과 특허청 상징, 기타 배경 도안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수리되기 전인 출원 서류 중출원인의 요청에 의한 서류의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16.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2.
- 「실용신안법」 제4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23조가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4691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서식에서 발명자 국적을 비필수 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7.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2.
-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4691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청구항을 포기하려는 경우 등 특허등록 및 특허증 재발급 과정에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며,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시 이용 가능한 전자출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림청)**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에 따라 목재류 수입신고 시 신고절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림청)**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품목, 수입검사기관 지정,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1.
- 보편적 역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감면 신청에 대한 절차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부적정한 요금감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이용자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요금감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성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1.
-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과 관련하여 설날 및 추석, 기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된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설날 및 추석, 기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2항제1호 마목 신설)

## 22.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1.
- 가. 준사관 모집시 전문성에 기초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제13조제1항 중 제2호의 준사관 모집시 경력 등 불필요 규제 폐지하고, 모집대상을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제1호와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수정(제13조제1항)
- 나. 군인 인사기록의 종류와 작성, 유지, 보관, 그리고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제88조)
-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의 현역복무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
  -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 중이나, 이들이 중퇴 시 현역복무를 위한 법령이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입영절차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가능
  - 2)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가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현역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장관급 → 장성급)으로 업무간 혼란 방지

## 23. 국방부위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7. 17.
-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7. 12.      • 마감일자 : 2017. 8. 21.
-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황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감리하는 경  
 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에  
 서 원도급자가 단순 중개인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2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7. 13.      • 마감일자 : 2017. 8. 2.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 한부모가정 등으로 오해받는 등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혈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여 다문화가정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나 부처협의 및 법안 심사과정에서 입법형식이 변경을 협의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개정
- 가. 외국인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중 주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등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등록사항, 거주 사실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관리
  - 3) 외국인등록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의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
  - 4)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의 체류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리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5)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인 등의 체류허가 등이 취소·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외국인 등의 체류허가 등의 취소·변경 등이 있는 경우 외국인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을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26.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7. 3.                      ● 마감일자 : 2017. 8. 14.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공공/민간에서 원하는 해양수산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하여 정보 자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공공 대민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7. 13.                      ● 마감일자 : 2017. 8. 22.
- 해양생태계의 훼손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해양생태환경의 차이와 개발행위별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협력금의 사용용도를 추가로 정하고, 협력금의 부과 징수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의 업무의 위임사항을 정함.

## **28.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7. 13.      • 마감일자 : 2017. 8. 22.

- 가. “포플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별표)
  - 1) 법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플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31조제2항)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 나. 그 밖에 법률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

##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7. 13.      • 마감일자 : 2017. 8. 22.

- 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공포(제14626호, '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의 시행일('17.9.22.)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정비하고자 함

##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7. 13.      • 마감일자 : 2017. 8. 2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 및 융자금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 “이라 함)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회수대상을 열거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데, 법률에 회수대상과 제한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운영제도이므로, 아시아문화도시법에 지원금회수대상과 지원 제한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헌법합치성(포

팔위임금지 원칙)을 제고하려는 것임.

### 31. 이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7. 13.                      • 마감일자 : 2017. 8. 22.
- 하천 내에 하천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함에 따라, 그 간소화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32. 이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7. 13.                      • 마감일자 : 2017. 8. 22.
- 신규로 하천점용허가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하천법이 일부 개정(' 17. 3.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 기득하천사용자 보호규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내지 5항 신설)
  - 1) 신규 점용허가로 인해 진출입 및 통행 장애, 수질 악화·소음 유발 등 유무형의 환경피해, 하천의 안전성 저해 등을 야기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행사에 손실발생이 명백한 경우로 동의요건을 한정함
  - 2) 하천관리청이 신규 허가신청의 목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해 신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양자는 동의여부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에게도 신규 신청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3) 기득하천사용자 동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규 점용허가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불합리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하천의 공공적·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 나. 하천관리청의 하천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요건 명확화(안 제58조제2항제1호)
  - 1) 현재 하천관리청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와 무관한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

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음

2)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등을 참고하여 하천관리청이 소관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7. 13.                      • 마감일자 : 2017. 8. 22.

○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 상습채불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며,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 대장 서식을 간소화하고 등록관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7. 13.                      • 마감일자 : 2017. 8. 22.

○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 상습채불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며,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 대장 서식을 간소화하고 등록관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3.

○ 특정대기유해물질(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36.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7. 19.

○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일부 직급에 대하여 통계·연구직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1년 이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조정된 정원 6명(5급 5명 및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3명, 7급 2명 및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6급 정원 7명의 직급을 5급으로, 9급 정원 1명의 직급을 7급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5.

○ 인허가, 신고 수리 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민원인의 행정 편의 향상을 위해 인허가 절차와 신고 수리 절차의 합리화(처리기간 명시, 간주제 도입)를 추진하고자 함

### **3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3.

○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비뇨기과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고, 전공의의 파견수련과 관련하여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의 파견수련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전공의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3.

#### ○ 가. 전문과목 명칭 변경(안 제3조)

-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함.

#### 나. 전공의의 정원 조정에 관한 근거 조문 정비(안 제8조 및 제16조)

-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함.

### **4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실)**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3.

○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없음.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며, 그 결과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 및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 행사참석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경호안전활동 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현재 대통령경호실은 경호구역 내에서 국가 공권력을 총괄하여 경호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더욱 강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41.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3.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조정,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자 조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선발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 **4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3.
-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청렴서약서 징구대상이 확대되어 서식을 신설하고, 수출허가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를 합리화하여 시행규칙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청렴서약서 서식 신설(안 제3조 개정)  
나. 방산물자 및 방산물자 견본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 합리화(안 제56조, 제57조 개정)

#### **4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3.
-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핵심기술연구개발 성실수행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범위를 구체화하며, 기술이전 및 수출 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범위 구체화(안 제4

조 신설)

나. 국제계약지원관 해외 현지근무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의4)

다.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  
(안 제37조)

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시장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유망수출품목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체계적 방산수출 인프라 구축 및 기품원 방산수출지원 업무 근거 마련 (안 제58조, 제71조)

마. 핵심기술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평가를 지원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성실수행 여부 평가를 지원하도록 임무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3 신설)

#### 44.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5.

○ 소방안전교육(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로 구체화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신규·수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안전교육 강사기준 및 교육용 기자재를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로 구체화 시킴(안 제5조제3항)

나. 최근 2년 이내 신규 수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7항)

다. 소방안전교육 강사기준을 실무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용 기자재를 현교육시스템에 맞게 정비(안 제8조 별표1, 제25조 별표5)

라. 비상구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수평거리로 명확히 하고, 비상구 부속 실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에서 불연재료로 강화하는 한편,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을 피난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안 제9조 별표2)

마. 규제 재검토 기한설정이 불필요한 기준을 해제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및 세부점검표 서식개선(안 별지 제7호및 제10호서식)

1) 안전시설 등을 시공한 소방공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기입하도록 서식 개선

2)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점검표에 보험관련 항목 추가

#### 45.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5.

○ 다중이용업소 적용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유권해석상 혼선을 초래하는 용어를 삭제하고, 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를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9조 별표1의2)

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 강화(안 제9조 별표1의2)

1)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적용대상이 일부 업종(7개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외 다수의 업종(16개 업종)은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통로가 있어도 통로폭 기준이 없음

2) 구획된 실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화재시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비상구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별표1의2)



## 46.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5.

- 다중이용업주 변경시 영업을 개시하기전에 허가관청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를 마련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업주 변경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 1) 다중이용업주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 등의 대형사고 발생 이후 영업주의 안전의식 및 자율안전관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2년마다 1회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하였으나, 영업주가 변경되면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영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시 허가관청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7. 14.                      • 마감일자 : 2017. 8. 23.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1483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내 대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
  -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공익신고의 이첩·송부

사실 또는 조사·수사결과에의 요지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리는 경우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진술·증언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경우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4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7. 17.                      • 마감일자 : 2017. 8. 28.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4765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권 행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4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7. 17.                      • 마감일자 : 2017. 8. 28.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4765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권 행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7. 17.                      • 마감일자 : 2017. 7. 20.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 과장을 임기제공무원 대상 직위에서 해  
제하려는 것임

## **5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7. 17.                      • 마감일자 : 2017. 8. 28.
- 보건진료소의 역할 변화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건진료소 실제 업무를  
반영하여 운영상황보고서를 정비하고자 함
- 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교육 내용별 기간을 삭제하고,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2조)
- 나. 보건진료소 운영 결과와 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보고서를 수정하고자 함(별지 제24호 서식)

## **5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7. 17.                      • 마감일자 : 2017. 8. 28.
- 소방용품 및 방염 선처리업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제품검사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시설 확보 비용을 개선하는 등의 개정 계획임
- 가. 제품검사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14)
  - 검사요원 기준 완화 : 8명 → 4명(경력기간 : 2~10년 → 1~8년으로 단  
축)
  - 검사장비 관련 : 고가의 시험장비 15종(형식승인 8종, 성능인증 7종)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에서 임대사용이 가능토록 개선
- 나. 소방용품 및 방염선처리물품 제조업체에서 합격표시를 직접 인쇄하  
는 방법 등 규정(안 제5조, 안 제24조)
  - (현행) 합격표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작하여 스티커 형태로  
제조업체에 공급하거나 첩인으로 각인하는 방식임
  - (개정) 제조업체에서 합격표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제품에 직접

합격표시를 할 수 있는 레이저 인쇄방식 등 도입

### **5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7. 18.                      • 마감일자 : 2017. 8. 28.
-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에 구성되어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입주 신청 및 관리, 입주 지원 등의 업무를 지역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7. 18.                      • 마감일자 : 2017. 8. 28.
-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운영근거 및 자문위원 비밀누설금지, 서약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7. 18.                      • 마감일자 : 2017. 8. 8.
-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중복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7호)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

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처리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제1호)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함

다.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 재정의 (안 제2조제13호)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으로 재정의하여 일관된 보호 원칙을 적용

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 (안 제3조의2, 제19조제3항, 제39조의2제7항)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과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중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제4장이 적용 배제됨을 명시함

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32조제12항·제13항, 제38조의4, 제42조 등)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하였던 내용들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함

바. 기타 개정사항(제17조)

신용정보 처리위탁의 방법을 명확히하고 위탁한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의 적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한정하는 등 신용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함

## 5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7. 19.                      • 마감일자 : 2017. 7. 31.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7. 19.                      • 마감일자 : 2017. 8. 28.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재산요건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4.18.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상·하한,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新) 중년 등 직장가입자 중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당해연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조정함(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1의2)
- 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노인, 청년 등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요건을 개선함(안 별표1)
- 다. 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의 보험료 반영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조정함(안 제44조)

## 5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7. 19.                      • 마감일자 : 2017. 8. 28.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재산요건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며, 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4.18.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상·하한,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新) 중년 등 직장가입자 중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기상청)

- 예고일자 : 2017. 7. 19.                      • 마감일자 : 2017. 8. 28.
-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고려하도록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785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의 등급 구분 및 평가 기준을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적설계 검정을 위하여 검정유효기간, 검정기준 및 수수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60.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기상청)

- 예고일자 : 2017. 7. 19.                      • 마감일자 : 2017. 8. 28.
- 적설계의 검정기준을 도입하여 기상측기 검정대상을 확대하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촉위원의 해촉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6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7. 20.                      • 마감일자 : 2017. 8. 29.
-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에 대한 임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에 대한 임시조사 근거 신설(안 제2조 제3항)  
나.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명확화(안 제5조, 별표)
  -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 내용·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제출 근거 삭제(안 제6조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6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7. 20.                      • 마감일자 : 2017. 8. 29.
-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3)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관련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명시(안 제4조3항)  
나.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 2)  
다. 개인정보 수집 근거 강화(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기타 서식 개선(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63.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7. 20.
- 마감일자 : 2017. 7. 31.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자격취득을 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개발비용산정기관의 보유인력의 자격 등 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